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규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54

발의연월일: 2021. 1. 13.

발 의 자:이규민·김경만·박영순

송갑석 · 신정훈 · 이동주

이수진 • 이용선 • 임호선

천준호 · 최혜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"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"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「민법」 제32조를설립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현재 명문장수기업 지정은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,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고, 기업성장의 다양한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에 따르면 규 모의 제한은 불필요해 모든 중견기업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자 함.

아울러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 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직· 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도 정부의 고용지원 대 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.

이와 함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선행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중견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명확히 정의함 (안 제2조제1호).
- 나.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제5항).
- 다.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을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, 제도를 중견기업 실정에 맞게 분리·운영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명문장수기 업 확인 및 취소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으로 변경함(안 제15조의2).
- 라. 신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함(안 제17조의8).
- 마.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에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포함함(안 제24조제1항).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갖춘"을 "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"으로 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제15조의2 중 "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"을 "중견기업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.

이 경우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5, 제62조의6 및 제86조제3항(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한정한다) 중 "중소 벤처기업부장관"은 각각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본다.

제2장에 제1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8(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)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 본다.

제24조의 제목 중 "중견기업"을 "중견기업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 항 전단 중 "중견기업의"를 "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"로, "중견기업에"를 "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중견기업"이란 다음 각 목 1. ------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-----<u>갖추</u>고 영리 말하다. 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----가. ~ 다. (생 략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2. • 3. (생략) 2. · 3. (현행과 같음)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무) ① ~ ④ (생 략) <신 설>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 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제15조의2(명문장수기업에 관한 제15조의2(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) <u>중견기업</u>-----특례)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2,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 -----. 이 경우 「중소기업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진흥에 관한 법률ᅟ 제62조의5, 본다. <후단 신설> 제62조의6 및 제86조제3항(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

<신 설>

제24조(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, 자금, 인력, 경영,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·작성·분석 및 관리할수 있다.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

②·③ (생 략)

	한정한다) 중 "중소벤처기업	부
	장관"은 각각 "산업통상자원	부
	장관"으로 본다.	
제	17조의8(청년 미취업자 고	용
	지원 특례) 매출액 등 기업	<u>규</u>
	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	로
	정하는 중견기업은 「청년고	용
	촉진 특별법」 제7조에 따	
	중소기업체로 본다.	
제	24조(<u>중견기업 등</u> 실태조사	및
	통계조사) ①	
		중
	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	의
	<u>중견기업 및 중견기업</u>	후
	보기업에	
	•	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